

##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 
공고합니다.

2020년 12월 22일

효문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허 *길	허 *길 1974-08-25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(진장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2-22
강 *수	강 *수 1967-04-02	울산광역시 북구 연암19길 (연암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12-22